

## ■ 퇴직(연금) 중간정산 신청 안내문

### [퇴직(연금) 중간정산 신청 절차]

√ 퇴직금 : 스캔본으로페이롤팀에 1차 제출 > 심사 > 원본서류 페이롤팀으로 발송 > 정기 지급일인 1일/14일/25일 지급

\*정기 지급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서류 심사 통과될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.

√ 퇴직연금 : 스캔본으로페이롤팀에 1차 제출 > 운용사 사전 심사 > 원본서류 페이롤팀으로 발송 > 운용사에 중도인출 지급 요청

\*원본 서류 페이롤팀 발송 이후로 평균적으로 2~3주일 정도 소요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
\*퇴직연금 정산 기간을 당해년도 까지 요청 시, 정기 지급일에 당해년도 추가불입액이 연금사에 불입된 후, 1~2주일 정도 소요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### [유의사항]

\*퇴직연금 대상자 중 당해년도 추가 불입 요청시 최대 한 달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.

\*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로 사본 명시된 서류 외에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고, 서류심사 중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# [공통서류]

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(회사 양식)

신분증 사본

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(운용사 양식)

\*퇴직연금 가입자만 해당

### [중도인출 사유별 구비서류]

| 사 유   | 증빙서류  |
|---|---|
| <b>1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</b><br>(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<br>登記 완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)<br>√ 배우자 명의 x<br>√ 공동 명의 o<br>√ 신청자가 무주택일 경우 가능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(최근1개월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현 거주지 주민등록상 건물 등기부등본 (*제출용 발급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산 매매(분양) 계약서 사본<br>*분양계약서 일 경우 계약서 전체 페이지 제출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매매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(*제출용 발급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사본 (ex. 입금확인서, 입금영수증 등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(전국자치단체)_동사무소 직접 방문 발급<br>*과세년도 : 직전년도~당해년도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_샘플 참고]<br><br>*아파트 :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/ *다세대주택 : 토지&주택 등기부등본  |
| <b>2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</b><br>√ 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청 가능<br>√ 배우자&공동 명의 o (단, 동거시 가능)<br>√ 신청자가 무주택일 경우 가능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현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(최근1개월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현 거주지 주민등록상 건물 등기부등본 (*제출용 발급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임차계약서 사본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(*제출용 발급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사본 (ex. 입금확인서, 입금영수증 등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(전국자치단체)_동사무소 직접 방문 발급<br>*과세년도 : 직전년도~당해년도 [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_샘플 참고]<br><br>*아파트 :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/ *다세대주택 : 토지&주택 등기부등본  |
| <b>3.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</b><br>(가입자,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)<br>√ 요양 종료 후 1개월 이내까지 중도인출 신청 가능<br>√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<br>12.5%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<br>√ 부양가족 범위<br>1) 만60세 이상 직계존속<br>2) 만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<br>3)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형제자매<br>4) 장애인(나이 불문, 입증서류 추가 제출) | <input type="checkbox"/> 동거 시 : 주민등록등본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동거하지 않을 시 : 주민등록등본 + 가족관계증명서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<br>*6개월 이상 요양 or 치료 or 투약 이라는 문구 필수<br>*장래 요양을 요하거나 요양 중인 경우 신청가능.<br>(단, 요양이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 1개월 이내 신청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연간 급여명세서 or 4대보험 보수총액신고서 등 (세전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동안 납입한 영수증 or 의료비 납입증명서 (청구서)<br>or 병원,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 or 지출이 예상되는 의료비 견적서 |
| <b>4. 가입자가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</b><br>√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<br>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회생절차개시 법원결정문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된 경우가 아님을 증명하는 법원 홈페이지 캡처본<br>(법원 홈페이지: <a href="http://www.scourt.go.kr/portal/information/events/search/search.jsp">http://www.scourt.go.kr/portal/information/events/search/search.jsp</a> )  |
| <b>5.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</b><br>√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<br>받은 경우 신청 가능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파산선고결정문  |
| <b>6.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<br/>   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</b><br>√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<br>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| 1. 물적피해 시(주거시설 등의 침수, 파손, 유실 매몰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피해신고서<br>(피해의 정도가 50% 이상임을 확인)<br>2. 인적피해 시 (사망, 실종,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관계증명원<사망, 실종 기재> (배우자 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사망 또는 실종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관계증명원, 입원확인서 (근로자(배우자 포함)와 그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)  |
| <b>7. 소정근로시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</b><br>(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<br>1일1시간 또는 1주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<br>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)<br>√ 소정근로시간 단축일 이후부터 노사간 별도 협의일<br>까지 신청 가능  |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확인 가능하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에 근로<br>자에게 별도의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계약서(연봉계약서) 등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|
| <b>8.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</b><br>√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부터 노사간 별도<br>협의일까지 신청 가능   | 사용자가 보유한 자료만으로 임금피크제의 시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신청서 이외<br>에 근로자에게 별도의 첨부서류를 받을 필요는 없음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취업규칙,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계약서(연봉계약서), 급여명세서 등 임금피크제 적용받는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|